

보도 일시	2022. 12. 28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28.(수) 09:30
담당 부서	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승대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관 이원재 (s9801530@korea.kr)

##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5차

- 기획재정부는 「2023년 경제정책방향(’22.12.21.)」에 따라 ‘민생안정’을 적극 추진하고자
  -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3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,
    -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\*를 12월 30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‘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\* 「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29호)」
-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4월부터
  - ①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/3 수준 인하\*하고,
  - ②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,
  - ③연체료율도 7~10%에서 5%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.
- \* 소상공인 : 재산가액의 3% → 1%, 중소기업 : 재산가액의 5% → 3%

### <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용 >

구 분	지원 내용
①임대료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상) 소상공인 : 재산가액의 3% → 1%</li> <li>중소기업 : 재산가액의 5% → 3%</li> <li>■ (한도) 연간 2천만원</li> </ul>
②임대료 납부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일반 사용자) 3개월 유예, 추가 3개월 연장 가능</li> </ul>
③연체료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산가액의 7~10% → 5%</li> </ul>

- 이러한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에 국유재산 사용자 관련하여 총 108,374건, 약 1,277억원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며
  -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·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29호

###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고 한다)」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, 같은 항 제6호의2,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·대부료의 경감 기간,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,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료율·대부료율의 경감)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·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,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용대상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사용료율·대부료율 :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
3. 적용기간 :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
4. 감면한도 : 회계연도별 2천만원

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·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,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용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소상공인은 제외하며, 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
2. 사용료율·대부료율 :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
3. 적용기간 :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
4. 감면한도 : 회계연도별 2천만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)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용대상 :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. 다만,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- 가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
  - 나.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
  - 다.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2. 적용기간 :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

3. 납부기한 연장 :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,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·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체료의 경감)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용대상 :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
가.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, 매각대금,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

나.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

2. 연체료율 :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

3. 적용기간 :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·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(기획재정부고시 제2022-14호, 2022.06.30.)에 따른다.

제4조(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)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(기획재정부고시 제2022-14호, 2022.06.30.)」는 폐지한다.